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3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·자영업자·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, 재난에 대한 ‘심각’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 기간, 시설물 등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5. 28.~6. 17.) 결과: 의견있음(별도 첨부)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6조의2(재난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/u></p> |

[별지 제2호서식]

|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| | |
|-------------|--|---|
| 의견제출자 | 제 출 의 건 | 조 치 내 용 |
| 역삼동 GS 타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상업시설 뿐 아니라 업무시설에도 적용되도록 검토요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|
| 현대백화점 신촌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개정에 동의 ○ 다만, 단위부담금도 현행유지토록 요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금번 개정사항에는 단위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|
| 한국호텔업협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호텔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50%이상의 감면을 적용이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최대 경감율은 30%로 규정하였으며,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향 조정하기는 어려움 |
| 더블유티씨서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시시설, 유통시설, 문화시설 등 최대 경감률(30%) 적용 요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- 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|
|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물을 고려하여 30% 범위에서의 경감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, '30% 범위에서 경감 할수 있다' 문구를 '30% 경감한다' 로 문구 수정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개정의 목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상황에 대한 최대감면율을 정하여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, 감면율을 30%로 특정할 경우 향후 모든 상황에서 30%감면을 하게 되어 특정상황에 대한 감면을 판단 및 적용이 어려움 |
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,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생기는 재정수입의 순감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 거

- 1차년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를 전제함, 30%, 15% 두가지 경감률 적용한 경우를 전제함,
-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 추세 반영('20년의 경우 12.4%)

- 비용추계기간 : 1년(5년 미만의 한시사업인 경우 사업기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① 30% 감면율 적용 가정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감면총액 추계(A-B) | 감면이전 징수 추계(A) | 감면이후 징수 추계(B)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30% 감면시 | 59,893,800 | 199,646,000 | 139,752,200 |

- ② 15%감면율 적용 가정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감면총액 추계(A-B) | 감면이전 징수 추계(A) | 감면이후 징수 추계(B)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5% 감면시 | 29,946,900 | 199,646,000 | 169,699,100 |

4. 재원조달 방안(해당없음)

5. 덧붙이는 의견

- 구체적인 경감율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진행할 예정임

6. 작성자 : 교통정책과 허준(2133-222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'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추계

-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 추세반영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구 분 | '17년도 | '18년도 | '19년도 | '20년도(추계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징수액 | 139,135 | 157,761 | 177,646 | 199,646 |
| 증가율 | 17.4 | 13.4 | 12.6 | 12.4 |